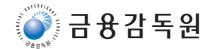
#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2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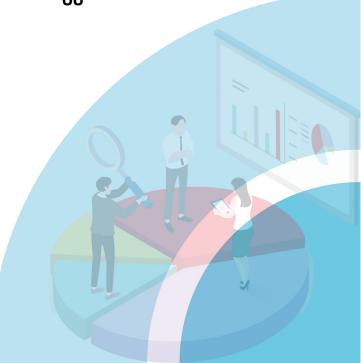




### **CONTENTS**



- 1 \_ 공통 ----- 1
- 2 \_ 전자금융 ---- 8
- **3** \_ 은행 44
- 4 \_ 자본시장 ---- 54
- 5 \_ 보험 ----- 68
- 6 \_ 상호저축 ---- 85



# 공 통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5)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영향으로 '21.2.4.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동의제도를 기존 동의서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 확보가 불가피하여, '21.5.31. 까지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2제2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비조치를 요청
판단	□ 법령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21.2.4.~'21.5.31. 기간 중에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2제2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3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0)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동의제도를 현장 적용하기에는 추가적인 시간 확보가 불가피하여 '21.6.30.까지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2제2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비조치를 요청
판단	□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의 영향으로 신규 동의제도와 관련한 등급발급 및 현장적용(인쇄, 지점 배포 및 시스템반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1.6.1.~'21.6.30. 기간 중에는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신용정보법 제34조의2제2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3)

요청대상 행위	□ 임직원용 업무용 단말기(내부 업무용 시스템 접속용도)와 인터넷용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인터넷용 단말기를 다시 논리적으로 분리(웹 격리기술 적용)하여 인터넷용, 문서 작업용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사항은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b>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b> 과 <b>분리·차단 및 접속금지</b> 를 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조제1항제3호)
판단이유	○ 이때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방식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이 회사가 <b>자율적</b> 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ul> <li>'19년 2월 비조치의견서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웹격리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것도 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li> </ul>
	□ 문의하신 방식은 임직원의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두 개(A, B)로 분리하고 (A)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 용도로 이용하고, (B)는 다시 웹격리 기술을 이용하여 문서 작업용(B')과 인터넷용(B")으로 이용하시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 업무용 단말기 두대(A, B')가 인터넷용 단말기(B")와 각각 물리적, 논리적(웹격리 기술 이용) 분리되었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용하시는 웹 격리 기술의 취약점 유무, 망구성 시 접점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7)

요청대상 행위	□ 콜센터 재택 및 원격근무 대상자를 위해 간접(원격)접속 프로그램 방식 기반의 재택근무 전용 솔루션의 사용이 금융권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b>간접(원격)접속 프로그램 방식</b> 기반의 <b>재택근</b> 무 전용 단말기를 사용한 망분리 방식은 망분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인해 회사 외부에서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없어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하였으나,</li> <li>○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20.2월)한 바 있고</li> <li>○ '20.11.6.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안을 갖춘 경우 상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li> <li>□ 여기서 보안을 갖춘 경우란, 회사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 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고 &lt;별표 7&gt;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li> <li>○ 귀 협회가 제출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 문의하신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망분리 적용이예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ul><li>□ 다만, 각 금융회사에서 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li><li>&lt;별표 7&gt;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li></ul>
	○ 아울러, 재택근무 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9)

요청대상 행위	□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농협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클라우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 「클라우드법」제2조제3호에 정의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 <sup>*</sup> 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201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판단이유	"상용"이란 무상·유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크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도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고, 무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상용에 해당
	□ 귀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
	○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서비스는 농협중앙회 계열사 들에 효율적인 업무지원 등을 위한 '非상용'서비스로 보여지고
	<ul> <li>전산시설등의 사용수수료를 내더라도 상용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아니라면 「클라우드법」에서 말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li> </ul>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서 규율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0)

요청대상 행위	□ 해외 개발자 PC가 클라우드 개발계 환경에 접속 후 개발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준수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판단	□ 문의하신 구성 중 해외 개발자PC에서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접속은 망분리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산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li> <li>○ 다만, 업무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위험성 평가,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하에서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2 제2항)</li> <li>□ 첫째, 문의하신 해외 개발자PC가 VPN을 통해 해외 클라우드에 위치한 개발전용 VDI 혹은 개발계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동 단말기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해당됩니다.</li> <li>○ 「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물리적 망분리 대상이고, 해외 개발자PC에서 상시 접속하는 경우는 「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의 예외사유인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분리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li> <li>□ 둘째, 국내 본사 전산실 내 개발자PC가 VPN을 통해 해외 클라우드에 위치한 개발계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는 동 단말기도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로써</li> <li>○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하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 등 망분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3)

요청대상 행위	□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 데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용도로 내부통제가 적용된 별도 시스템에서 미변환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1항 제10호)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1항제10호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됩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감독원은 2019.5.8.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적절한 통제를 마련·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정합성 검증 용도로 이용자 정보 사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li> <li>○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ul> <li>*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li> <li>**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li> <li>○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용도로 제한하여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 정보 사용이 가능하다는 비조치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li> <li>□ 귀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li> <li>○ 작업인력 및 접근권한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적용하고, 별도의 검증전용 DB에서 검증하며, 테스트 완료 후 즉시 삭제할 예정이므로,</li> <li>○ 귀사의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 테이터 이행 및 정합성 검증용 이용자정보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제1항제10호의 예외사항으로 판단됩니다.</li> </ul> </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4)

요청대상 행위	□ 보험영업 상담사의 상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및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재 택근무 환경 방식 중 '직접 접속 방식'의 근무 가능 여부
판단	□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 등 적절한 통제기준을 마련·적용할 경우, 보험영업 상담사도 직접 접속방식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ul> <li>□ 금융감독원은 2020.11.6.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21.1.1. 시행)하여 보안을 갖춘 경우 상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li> <li>○ 여기서 보안을 갖춘 경우란, 회사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 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고 동 시행세칙 &lt;별표 7&gt;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li> </ul>
판단이유	<ul> <li>□ 귀 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li> <li>○ 보험회사 소속 보험영업 상담사의 재택근무를 추진하면서 보험회사 임직원 재택근무 방식의 보안수준과 동일한 보안수준을 적용한다면, 본사 소속 보험영업 상담사도 문의하신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li> </ul>
	□ 다만, 재택근무 시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및 그 외 관계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강화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필요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20)

요청대상 행위	□ 업무용 단말기(노트북)를 이용하여 '직접접속' 방식으로 사내 내부망에 접속시, 업무용 단말기 부팅 후 부터 보안프로그램이 구동하여 인터넷이 차단되기 전까지 잠깐 인터넷 접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않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b>망분리</b> 관련 <b>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b> 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로(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인해 회사 외부에서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없어 재택근무가 사실상 불가하였으나,</li> <li>○ '20.11.6.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안을 갖춘 경우 상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li> <li>○ 여기서 보안을 갖춘 경우란, 회사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 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고 &lt;별표 7&gt;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li> <li>□ 귀 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 업무용 단말기가 부팅된 후보안프로그램이 즉시 실행되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li> <li>○ 문의하신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i> <li>□ 다만, 각 금융회사에서 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lt;별표 7&gt;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li> <li>○ 특히, 무선망을 통해 내부 업무망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공유기 취약점 및 무선통신 구간 취약점에 의한 보안사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23)

요청대상 행위	□ 수탁사가 자사 지분을 100% 가진 모회사로서, 수탁자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b>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b> 합니다.
	□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ul> <li>다만,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하는 등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li> </ul>
	* 자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7>에서 정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2 제3항)
판단이유	□ 귀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 귀 사의 지분을 100% 가진 모회사는 계열사*에 해당되고, 해당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결하는 것이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 2조2 제2항 제2호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계열사"는 해당 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의미
	○ 다만,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합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27)

요청대상 행위	<ul> <li>「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은행, 정부, 공단 등과 같은 웹사이트로 접속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li> <li>중요 단말기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관리자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li> </ul>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
	○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ul> <li>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ul>
	② 전자금융업자 등은 단말기의 용도 및 취급 자료의 종류, 위험 수준을 고려 하여 자체적으로 중요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ul> <li>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칙을 적용하고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 회선(VPN 등) 사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구간에 위치한 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28)

요청대상 행위	□ ID/PW 인증 및 사용PC의 MAC주소 인증 방식으로 재택근무시스템에 연결 하는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이중인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인증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 이중인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감독원은 2020.11.6.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21.1.1. 시행)하여 보안을 갖춘 경우 상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li> <li>○ 여기서 보안을 갖춘 경우란, 회사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 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고 동 시행세칙 &lt;별표 7&gt;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li> <li>□ 귀 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재택근무시스템 접속 시 ID/PW 인증 (지식인증) 및 MAC주소 인증(소유인증) 방식은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하는 인증수단 2개를 조합한 것으로 '이중인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li> <li>○ 다만, 재택근무 시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3항* 및 그 외 관계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강화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필요</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4)

요청대상 행위	□ 중요단말기의 범위와 보호조치에 대하여 구성이 적법한지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li>□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해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2조 제3호)</li> <li>○ 「감독규정」에서 중요단말기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 및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중요단말기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중요 단말기는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하여야 합니다.</li> </ul>
판단이유	<ul> <li>□ 금융회사는 전산실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li> <li>○ 귀 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 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단말기는 「감독규정」 제15조의 제1항 제5호의 단말기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망분리의 대상입니다.</li> <li>○ 또한, 동 단말기가 중요단말기로 지정되어 있다면 「감독규정」 제12조 제 3호에 따라 그룹웨어 접속 등도 금지하여야 합니다.</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5)

요청대상 행위	<ul><li>□ 금융회사의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 접속시, 중요단말기도 원격접속이 가능한지</li></ul>
판단	□ 중요단말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원격 접속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금융회사는 단말기 보호를 위해 외부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제12조 제3호)
판단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중요단말기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 및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중요단말기를 지정 하실 수 있으며,
	○ 동 규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중요 단말기는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중요단말기로 지정된 단말기는 외부 반출하여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접속을 할 수 없습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7)

요청대상 행위	<ul> <li>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확진자 발생으로 업무공간 폐쇄) 전산센터의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센터 內 업무시스템(개발·운영·보안)에 원격접속하여 재택에서 개발·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li> <li>고객사(은행) 전산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점 업무지원을 위하여 재택근무 환경에서 원격접속을 통하여 고객정보 열람이 가능한 업무화면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li> </ul>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센터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5호)</li> </ul>
	○ 다만,「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의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는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하며, 문의하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업무공간이 폐쇄된 경우는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21.1.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이 개정·시행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용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ul> <li>또한, 업무용단말기의 재택근무 가능 범위는 제한이 없음을 비조치 의견서로 회신한 바 있으며(2020.4.17., 2020.7.14.), 문의하신 사실관계에서는 고객정보 관련 업무도 재택근무 가능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li> </ul>
	<ul> <li>다만, 입출금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정보 등 중요 자료를 취급하는 바, 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에 더욱 유의하시고 강화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재택근무 직원 및 단말기 사전승인, 재택근무 단말기는 회사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통제 적용, 원격접속시 통신 암호화 및 이중인증 적용, 원격접속 및 자료 반출입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등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9)

요청대상 행위	□ 내부업무망 단말기에서 ① (금융감독원)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② (금융투자 협회)법규정보시스템 ③ (증권거래소)법규서비스 사이트 ④ (법제처)세계법제정보 센터에 연결하는 것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1항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ul> <li>□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li> <li>○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에서는 특정 외부기관의 범위를 행정자치부, 금융협회 등 정부 또는 금융 유관기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li> </ul>
	<ul> <li>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li> <li>* '21.6.10. 내부 업무용단말기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은행, 정부, 공단 등과 같은 웹사이트로접속하는 것은 망분리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을 회신</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1)

요청대상 행위	□ 내부업무망 단말기에서 ① 금융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항목 ② 국민참여입법센터 ③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제1항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ul> <li>□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 함은</li> <li>○ 망분리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li> <li>○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정보 취득 및 취득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li>* (참고) '21.6.10. 및 7.13. 내부 업무용단말기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은행, 정부, 공단 등과 같은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망분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을 회신</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2)

	<ul><li>□ 귀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하여「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하는지</li></ul>
요청대상 행위	② 귀사가 보안로그를 전송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제2조의2의 망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③ 귀사의 통신채널 구축이 정보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부합되는지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에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CIC 보안관제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특히,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보고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② 귀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AWS 클라우드에 구축된 CIC보안관제서비스로 보안로그를 전송하는 행위는「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제2조의2 제2항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금융회사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각 관련 법령상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ul> <li>다만,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서는 기반 기술과 구현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보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6)

요청대상 행위	□ 비대면회의를 위한 모바일 화상(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에서 <b>망분리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b> 하고 있는 <b>'업무 특성상</b> <b>분리하기 어려운 경우'</b> 라 함은
판단이유	<ul> <li>망분리 환경에서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li> </ul>
	<ul> <li>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요청대상 행위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 편 의를 위한 것이라면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ul>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8)

요청대상 행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에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순차적으로 구성할 경우, 운영환경이 이행되는 시점에 클라우드 이용절차(「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를 수행하는 것이 동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판단	□ 문의하신 사항은「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조항으로
판단이유	<ul> <li>동 규정에서는 개발환경 구성, 운영환경 구성 등 클라우드 이용목적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동 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li> </ul>
	<ul> <li>특히,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보고해야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 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서 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9)

요청대상 행위	□ 기존 서버 가상화 방식의 논리적 망분리 방식(SBC or VDI)에서 PC 가상화 방식의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CBC)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솔루션이 망분리 규정에 준수하는지 여부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ul> <li>□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를 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li> <li>○ 이때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 방식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li> <li>* 2019년 2월 및 2021년 2월 비조치의견서 참고</li> <li>○ 다만, 이용하시는 논리적 망분리 솔루션(CBC) 기술의 취약점 유무, 망구성시 접점발생 여부, 서버가상화(SBC) 망분리 솔루션 대비 보안수준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50)

요청대상 행위	□ 신용정보법상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 대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나, API 및 통합인증 관련 시스템 개 발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대 6개월 내외의 API 의무화 유예가 필요
판단	<ul> <li>□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보제공자인 금융회사 등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표준API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1.8.4.~'21.12.31. 기간 중에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하는 것이 타당</li> <li>○ 법령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IT개발인력 부족으로 금융회사 등의 전산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li> <li>○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있음</li> </ul>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 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52)

요청대상 행위	□ 재택근무용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VDI를 구축할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內 원격접속 전용 VDI(ex: MS Azure VDI 등)를 사내공개망의 VDI와 동일하게 사내망에 속하는 업무용 단말기(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적용 대상)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퍼블릭 클라우드 內 원격접속 전용 VDI는 업무용 단말기로 볼 수 있습니다.
	□ '21.1.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이 개정·시행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용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판단이유	○ 내부망에 접근하는 방식은 회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통한 간접접속 방식으로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의 VDI 서비스 활용도 가능합니다.(재택근무안내서 2p)
	□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의 VDI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금융회사 임직원은 동 VDI의 가상 업무용 단말기를 경유하여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기 때문에, 동 VDI의 가상 업무용 단말기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제15조제1항제3호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58)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기 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ul> <li>위기극복 및 위기 이후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일시적 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간대가 형성되었음</li> </ul>
	□ 이에 '21.8.11. 금융위, 금감원 및 금융권은 간담회를 통해 ①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국공유 및 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고, ②전 금융권은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 8.12. 각 금융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21.10월 중 시행 예정)
요청대상 행위	□ 동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1 1.부터 '21.8.31.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1.12.31.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여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나,
	<ul> <li>이러한 신용회복 지원활동은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최 신성 유지 의무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비조치 등 행정적 지원병 안이 필요</li> </ul>
	금융권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
	<ul><li>● '20.1.1.~'21.8.31. 기간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21년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 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금융권 상호 간 공유를 제한</li></ul>
	②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무를 성실한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이 력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
	❸ 신용정보원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
	♪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

을 최대한 반영 등

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

####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액연체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감 독당국과 금융권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 o '20.1.1.~'21.8.31.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021.12.31.까지 전 액 상환(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된 개인·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판단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 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 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 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 판단이유 합리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 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 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은 행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5)

요청대상 행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원화예대율 경영지도비율(100%)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동 경영지도비율을 위반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2021.12.31.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원화예대율이 105%를 상회하지 않을 경우, 원화예대율 경영지도비율 위반을 이유로 한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면제 다만, 원화예대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상승 원인, 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악화된 점 및 2021. 3. 8. 금융위·금감원이 은행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경영지도비율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29)

요청대상 행위	□ 외국계 시중은행의 임원이 해외 계열 모은행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겸직하는 것이 법규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 외국계 시중은행의 임원이 해외 모은행에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판단이유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 겸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객과의 이해 상충 소지,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법에서 명시한 경우에만 겸직이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ul> <li>동 법에서는 외국계 시중은행의 임원이 해외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계열사 모은행에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은행 임원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이나 겸직 보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li> </ul>
	□ 아울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해상충 소지, 건전한 경영 저해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겸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1)

요청대상 행위 안내 등의 사유로 추가주택구입금지 특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ul> <li>■ 은행 직원의 오안내 등을 원인으로 하는 특약위반에 대하여 신 요청서에 기재한 사유로는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lt;별표 18: 호 라목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음</li> </ul>	> 제14
<ul> <li>●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등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 &lt;별표 따라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구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하며,</li> <li>●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lt;별표 18&gt; 제14호 라목에 따르면 특약을 체결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해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li> <li>□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lt;별표&gt; 18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된를 제외하고는 특약 위반과 관련된 별도의 예외가 없음</li> </ul>	E 6>에 하여야 은행은 은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2)

요청대상 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출신청 및 상담이 접수되어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8>의 LTV 산정시 적용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대출신청 및 상담시점'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취득시점 기준'에 적용될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ul> <li>□ 차주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 시행일 전일까지 대출신청 또는 상담을 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lt;별표18&gt;에 따른 LTV 산정시 대출신청 또는 상담시점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할수 있습니다.</li> <li>○ 다만, 은행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 또는 상담' 날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li> <li>□ 이 경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 최우선소액변제 임차보증금 상향되어 LTV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li> </ul>
판단이유	<ul> <li>□ 본 건에 한해,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대출신청시점의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적용가능 합니다.</li> <li>①「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창구나 고객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li> <li>② 이미 대출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차주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출한도 축소로 주택매매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가능을 고려할 필요</li> <li>③ 대출신청 및 대출한도 상담을 완료한 차주와 은행간 신뢰관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3)

요청대상 행위	<ul>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미목에 따라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이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되는 경우 임직원 대출금 산정시 제외되는데, 임직원이 임대사업자로서 기업 시설자금대출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제외되는지 여부</li> <li>○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타행대환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은행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연기 또는 대환시대출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판단	□ 임대사업자가 기업 시설자금대출 형태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출금 한도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
	○ 재직이전 임대사업자 대출의 연기·대환에 대해서는 기회신('20.11월)한 바와 같이 불가
	□ 관련법규는 자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고 가계성자금 의 소액대출 <sup>*</sup> 등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도를 정해 허용
	* 일반자금대출(2천만원) 등
판단이유	<ul> <li>다만,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한도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시업자로서의 사업성자금 대출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li> </ul>
- 런던이ㅠ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이전 실행한 대출은 허용됨
	<ul> <li>"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동 규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 재직이전 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출에 대출규제 등 예외 상황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만기연장이나 갱신 등을 통해 연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음</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36)

요청대상 행위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마목에 따라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이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되는 경우 임직원 대출금 산정시 제외되는데, 임직원이 임대사업자로서 기업 시 설자금대출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 임대사업자가 기업 시설자금대출 형태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출금 한도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
판단이유	<ul> <li>□ 관련법규는 자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고 가계성자금의 소액대출*등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도를 정해 허용</li> <li>* 일반자금대출(2천만원) 등</li> <li>○ 다만,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은 한도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성자금대출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li> </ul>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56)

요청대상 행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원화예대율 경영지도비율(100%)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동 경영지도비율을 위반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판단	2022.3.31.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등으로 원화예대율이 105%를 상회하지 않을 경우, 원화예대율 경영지도비율 위반을 이유로 한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면제 다만, 원화예대율이 10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비율상승 원인, 조치사항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악화된 점 및 2021. 9. 29. 금융위·금감원이 은행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경영지도비율을 완화한 취지 등을 감안

# 자본시장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8)

요청대상 행위	□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시 필요한 집합투자업 전담 준법감시인력(이하, '전 담인력') 구축과 관련하여 ① 전담인력을 자산운용부서가 아닌 준법감시부서 소속 등으로 운용 ② 전담인력이 집합투자업 뿐 아니라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전담인력이 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이상 반드시 운용부서에 소속 되어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
	<ul> <li>다만, 해당 인력이 집합투자업 외에 일임업·신탁업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같이 수행할 경우 전담인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판단이유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증권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12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2)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및 임의상환과 관련된 다음 규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 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제4-25 조제3항)
요청대상 행위	<ul> <li>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증권 등을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 가능(「금융투자업 규정」제4-28조제1항제2호)</li> </ul>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 고 담보증권 등을 임의처분 할 수 있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제2항 전단)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불안 및 투자자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규제에 대해 1년간('20.3.16~'21.3.15.) 부여되었던 <sup>*</sup> 다음의 특례를 약2개월간('21.3.16.~'21.5.2.) 연장합니다.
	*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 적용(일련번호 200020, '20.3.13.)
판단이유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을 예외 적용하여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ul><li>同 규정 제4-28조제1항제2호를 예외 적용하여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li></ul>
	<ul> <li>同 규정 제4-28조제2항 전단을 예외 적용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ul> <li>다만,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담보비율</li> <li>및 임의상환방법 변경에 관한 사전 안내 및 협의가 필요</li> </ul>

- □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담보유지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同 담보유지비율을 신용 공여금액의 14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 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3)

요청대상 행위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금리변동위험 회피 등을 위하여 금리스왑(IRS) 거래를 함에 있어 다수의 거래상대방(은행 등)으로부터 가격제안을 받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친 결과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A은행)이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을 제시한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이해관계인(A은행)을 금리스왑(IRS)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1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금리변동위험 혜지 등을 위한 금리스왑(IRS)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찰 담합 등 위법·부당행위의 소지가 없이 다수의 거래상대방(은행등)을 대상으로 유효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입장에서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며, 경쟁입찰 결과 및 선정사유·선정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유지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관계인(A은행)간에 실질적인 이해상층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유	□ 법 제84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용역의 성격, 내용, 거래방식,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거래금액, 지급조건 등 거래와 관련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금리스왑(IRS) 거래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이외에 일반적·통상적 거래방식이나 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존에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한 예가 있다면 기존의 통상적인 경쟁입찰 방식·조건에 비해특이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유효하고 공정하며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입찰이 진행되고 거래상대방 및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할 것입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 조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험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1)

요청대상 행위	□ 계리평가 서비스를 퇴직연금 총괄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계리평가 서비스 수행부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계리평가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판단이유	<ul> <li>□ K-IFRS 계리평가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안내(연금감독-00081)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li> <li>○ K-IFRS 계리평가서비스 수행부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li> <li>□ 다만, 퇴직연금 영업을 위해 계리평가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li> <li>* (예시) 퇴직연금 영업을 위해 사용자의 퇴직급여부채 산출액을 임의로 조정</li> <li>○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2)

요청대상 행위	□ 기 회신 비조치의견서 '건설기계 등의 일반보험으로의 인수 가능 여부'의 내용 <sup>*</sup> 과 관련하여, 일반손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위험을 인수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계 등의 분손 사고시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정형화된 담보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할 필요(일련번호 170017, '17.3.30. 회신)
판단	□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자동차보험의 정형화된 담보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일반손해보험으로 인수
판단이유	<ul> <li>□ 기 회신된 비조치의견서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정형화된 담보는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할 필요가 있으나</li> <li>○ 인수거절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정형화된 담보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의 보장사각지대(Gray Zone)에 해당하는 위험은 일반손해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여</li> <li>-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기업 경영활동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li> <li>○ 다만,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중복가입 문제,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 증가 등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수</li> <li>※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회신한 법령해석 간 및 비조치의견서간, 또는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간 회신내용이 다를 경우</li> </ul>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6)

요청대상 행위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 하위법령(감독규정 등)이 '21.3.17.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나, '21.3.25. 금소법 시행일 전에 모든 보험상품의약관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보험약관에 금소법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보험업법 제128의3) 위반 소지가 발 생하는 바, 이에 대해 일정기간 비조치를 요청
판단	□ 금소법 제정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제도 안착 중심 감독 예정인 점, 금소법령 등이 내용상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약관 반영시 불완전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우려 등을 감안하여,
	① 금소법을 준수하고 ② 보험가입자에게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도입·변경되는 내용을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설명하며 ③ 보험약관 미반영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와다툼이 생긴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적용할 것을 전제로,
	금소법 시행일('21.3.25.)로부터 최대 6개월 간, 금소법령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 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단, 보험약관에 반영할 여건이 조성된 때에는 6 개월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충실히 반영할 것.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 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7)

요청대상 행위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 하위법령(감독규정 등)이 '21.3.17.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나, '21.3.25. 금소법 시행일 전에 모든 보험상품의약관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보험약관에 금소법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보험업법 제128의3) 위반 소지가 발 생하는 바, 이에 대해 일정기간 비조치를 요청
판단	□ 금소법 제정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제도 안착 중심 감독 예정인 점, 금소법령 등이 내용상 완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약관 반영시 불완전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 우려 등을 감안하여,
	① 금소법을 준수하고 ② 보험가입자에게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도입·변경되는 내용을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설명하며 ③ 보험약관 미반영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와다툼이 생긴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적용할 것을 전제로,
	금소법 시행일('21.3.25.)로부터 최대 6개월 간, 금소법령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비조치할 예정. 단, 보험약관에 반영할 여건이 조성된 때에는 6개월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충실히 반영할 것.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 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견 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45)

요청대상 행위	□ 코로나-19 확산 우려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교육방법인 "집합교육"이 곤란하므로, "온라인교육" 등 대체적 방법을 통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 이수를 한시적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판단	<ul> <li>□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li> <li>○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별표4제2호다목에서 정한 교육방법中 "집합교육"이외에 "온라인교육"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제재를 비조치</li> <li>※ 동 비조치의견서는 2021.12.31.까지 유효</li> </ul>
판단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 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54)

질의요지	<ul> <li>□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에서</li> <li>*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li> <li>○ 조사행위의 주체는 누구인지?(보험사인지, 피보험자인지)</li> </ul>
회답	<ul> <li>"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기관에서 발급을 제한하는 보험사 제출용 요양급여내역서에 대한 피보험자의 미제출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li> </ul>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행위의 주체는 보험회사입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한 피보험자 등의 협조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동의 요청에 피보험자 등이 동의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경우 보험회사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보험자 등이 보험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보험회사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등의 추가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범위내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ul> <li>다만, 피보험자 등의 추가적인 협조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피보험자 등과 보험회사간 협의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li> </ul>
이유	□ 회답과 같음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61)

요청대상 행위	□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전화 방식에 한하여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이 가능한데, 계약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
판단	<ul> <li>□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1항은 해피콜 실시 방법으로 전화 및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보험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을 허용하되,</li> <li>○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 방식의 해피콜만 허용</li> <li>*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경로우대자와 체결한 계약, 전화를 통한 실손</li> </ul>
	의료보험 등  ○ 현행 법규 하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의 경우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실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수용이 어려움
판단이유	□ 동 비조치 요청사항은 현행 법령등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ul> <li>현행 법규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추후 소비자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세칙 개정 검토 여부를 판단할 필요</li> </ul>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04)

요청대상 행위	□ 차주(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대출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PF대출의 일반대출 분류기준 <sup>*</sup> 판단시 대출한도액에서 제외 가능한지 질의  *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 초과
판단	□ 대출한도액 산정시 시공사의 대출액을 포함한 PF 사업장과 관련된 전체 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판단이유	□ PF대출의 리스크는 당해 PF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자기자 본 인정은 대출 취급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었다 고 대출한도액에 제외되는 것은 아님

- ※ 비조치의견서의 호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19)

대상행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sup>*</sup> 으로 인하여「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2021.12.31.까지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신용협동조합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2020.4.1. 발표된「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판단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예대율 규제 비율에 근접한 일부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4.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의 예대율 규제를 위반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2021.12.31.까지 조치를 면제할 예정 * 2020.4.1. 발표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다만, 개별 조합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예대율 기준 규제비율(80~100%)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일련번호 210055)

대상행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인하여「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대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2022.3.31.까지 예대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신용협동조합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 2020.4.1. 발표된「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판단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예대율 규제 비율에 근접한 일부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4.1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하여
	□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의 예대율 규제를 위반한 신협·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해 2022.3.31.까지 조치를 면제할 예정 * 2020.4.1. 발표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다만, 개별 조합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예대율 기준 규제비율(80~100%)을 상회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판단이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①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u>비조치의견서의 효력</u>(「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 제1항·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